

『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법률 제8435호 (2007.5.17)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대법원규칙 제2119호 (2007.11.27)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이 제정·공포되어 「호적법」이 폐지되고
-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이 2008. 1.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호적과태료의 부과대상, 부과징수, 부과주체, 부과기준, 부과절차 및 이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에 따른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을 적용함으로써 「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」를 폐지하여 법규를 정비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1995.1.1 조례 제0048호 「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」 폐지

4. 참고사항

-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1조~제124조
-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 제50조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2007.5.17 법률 제8435호로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·공포(호적법 폐지)되어 2008.1.1 부터 시행됨에 따라
- 호적과태료의 부과대상·기준·절차 등이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「구미시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」를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